

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

보고시설	산후조리원 명칭				전화번호							
	주소											
이송현황	이송 일시 예) 2020년 1월 16일 14:30											
	이송 대상자 예) 임신부 1명, 영유아 3명											
	진단명 예) 로타바이러스,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(RSV) [] 의심 [] 확진				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은 일시 예) 2020년 1월 16일 14:30							
조치결과	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실, 격리기간,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 등을 알린 일시 예) 2020년 1월 16일 14:30											
	소독											
	일시		방법		약품명		장소					
	격리(완전 모자동실 권장)											
	전체 영유아 (A+B+C+D)		모자동실(A)			퇴원(B)	기타(C)	미실시(D)				
			소계	완전	부분							
	발생감시											
	조사대상자(A+B)				증상이 없는 사람(A)				증상이 있는 사람(B)			
	소계	임산부	영유아	종사자	소계	임산부	영유아	종사자	소계	임산부	영유아	종사자

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 산후조리원장

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보건소장 귀하

유의사항

-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신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소독 및 격리 등의 결과를 적습니다.
-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.
- 영유아를 이송한 경우 영유아실 전체를, 임신부를 이송한 경우 임신부실 전체를 소독합니다.